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2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8. 11.
4. 회부일자 : 2020. 8. 19.

Ⅱ. 제안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지출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수입계획) 38,460백만원→318,637백만원(증 280,177백만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411백만원→318,411백만원(증 280,000백만원)

○ 이자수입: 49백만원→226백만원(증 177백만원) ※ 2021년 12월 말까지 예상이자수입

2. (지출계획)38,460백만원→318,637백만원(증 280,177백만원)

○ 예치금: 38,460백만원→318,637백만원(증 280,177백만원)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2021년 수입액			항목	2021년 지출액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기정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C=B-A)	증감율 (D=C/A)
합 계	**38,459,744**	**318,637,404**	**280,177,660**	**합 계**	**38,459,744**	**318,637,404**	**280,177,660**	**728%**
교특회계 전입금	38,411,000	318,411,000	280,000,000	예 치 금	38,459,744	318,637,404	**280,177,660**	**728%**
이자수입	48,744	226,404	177,660					

3. 변경사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나, 학교의견 수렴,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억원 증

○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2차 추경예산안 확정시기(9월) 등을 감안할 때 연도내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노후 냉난방개선, 석면 해소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함.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00억원 증

Ⅳ.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22호로 제출되어 2021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1]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

1)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생 략>

○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서는 지출계획 중 ‘예치금’의 지출금액이 기존 384억 6천만원에서 3,186억 3천 7백만원으로 2,801억 7천 8백만원(728%)이 증액되었는바, 이와 같은 대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되었습니다.

[표-1]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	변경 (A)	당초 (B)	증감 (A-B)	증감사유
수 입 합 계	**318,637**	**38,459**	**280,178**	
자 체 수 입	226	48	**178**	
이 자 수 입	226	48	**178**	예치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
기 타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내 부 거 래	318,411	38,411	**280,000**	
전 입 금	318,411	38,411	**280,000**	2차 추경 편성 시 연내 집행 불가로 기금 관리 후 집행
지 출 합 계	**318,637**	**38,459**	**280,178**	
예 비 비 및 기 타	318,637	38,459	**280,178**	
예 비 비 및 기 타	318,637	38,459	**280,178**	
내 부 유 보 금 (예 치 금)	318,637	38,459	**280,178**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금고예치금 증가

○ 이와 같이 동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예치금이 대폭 증가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증가가가 주요 원인으로, 이는 ‘그린스마트미래

학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341억원을 투자하여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0%(9,700억원) 지방비 70%(2조 2,600억원)의 대응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5년 동안 사업 대상학교는 총 213개교로 개축 대상학교 93개교, 리모델링 대상학교 120개교입니다.

[표-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유형별 추진 계획

(기준: 학교수)

사업유형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축	93	35	19	15	11	13
리모델링	120	21	26	25	24	24
합계	213	56	45	40	35	37

○ 이와 관련하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금년에 대상학교가 일부 선정되었으나 실제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및 부지 조건 분석, 공공건축심의, 자체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의 장기간에 걸친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는바, 결국 동 사업비는 전액 불용될 수밖에 없어 우선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은 2021년에 교부된 2,301억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냉난방기 교체 및 석면 해

소[3]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건수는 765건이며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2,077억 1천 7백만원, 석면 해소 비용으로 222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계획

순번	설립	기관구분	냉난방 개선		석면 해체비 반영액 (천원)
			사업 건수	소요액(천원)	
1	공립	동부	33	15,488,393	22,283,190
2		서부	41	11,142,995	
3		남부	58	18,015,150	
4		북부	69	25,600,140	
5		중부	35	8,385,720	
6		강동송파	68	23,799,840	
7		강서양천	45	12,287,430	
8		강남서초	50	13,771,635	
9		동작관악	66	12,480,605	
10		성동광진	51	16,560,390	
11		성북강북	41	12,328,700	
12	사립	교육시설관리본부	208	37,855,812	
계			765	207,716,810	22,283,190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의 단위사업별 개별공사에서 3년마다 학교단위 통합공사[4]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냉난방 개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간접공사인 석면, 바닥, 내진공사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공사로 진행하던 것을 통합공사로 변경할 경우 개별공사보다 장시간의 설계, 공사입찰, 계약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금년에 동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3) 석면이 있는 학교의 경우, 냉난방기 교체 이전 석면 해소 필요.
4) 매년 보수공사로 인한 학교 민원 증가, 학교 공사 빈도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함.

[표-4]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

구분	기존	변경	기대효과
추진방법 실태조사	단위사업별 개별공사 매년	학교단위 통합공사 3년마다	학교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안전성·효율성 증대

○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의 교부금 교부로 많은 사업들을 일시에 추진할 경우, 교부시기와 공사 집행시기의 불일치, 기존 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 및 명시이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기금으로 우선 적립하여 공사시기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타당한바, 교부금 사업비를 기금으로 조성하려는 금번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